

# 서울신학대학교 이단종교활동 규제 지침

**제1조 (목적)** 이 지침은 본 대학교 설립이념(학칙 제1조)과 학생활동(학칙 제54조)에 근거하여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인정한 종교집단의 기망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① 기독교계가 이단으로 인정한 종교집단이라 함은 공신력이 있는 한국교회연합의체와 본 대학교가 소속한 교단(기독교대한성결교회)에서 이단으로 판정한 집단을 말하며, 그 내용은 잘못된 교리적 주장과 비도덕적 행태 및 교주를 신격화하는 경우를 말한다.

② 기망적 활동이라 함은 자신의 종교를 숨기고 개인과 단체의 활동(취미, 여가, 어학공부, 심리검사 등 여타의 방법)으로 타인을 끌어들이 본조 1항의 이단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이단으로 인정한 모든 종교집단의 활동과 종교집단으로부터 직·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 적용한다.

**제4조 (규제내용)** 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할 수 있다.

- ① 이단 종교집단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.
- ② 본교의 구성원은 이단집단에서 계획·시행하는 모든 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못하며 가입·지원할 수 없다.
- ③ 이단 종교집단 관련인의 출입은 물론, 포교활동, 개별적 성경공부, 포스터 부착, 선전물 배포, 집회, 세미나, 수련회 등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
**제5조 (징계)** 위의 사실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.

- ① 학칙 제1장 제1조(설립이념), 제4장 제23조 4항(징계), 그리고 시행세칙 제7장 25조 8항(징계)에 따라 징계한다.
- ② 이단 종교 활동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미 휴학한 자에 대해서는 복학 신청하였을 시 이단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복학을 거부할 수 있다.
- ③ 이단 종교집단의 관련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교내출입을 금지하고 게시판에 알린다.

**제6조 (이단대책위원회)**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
- ① 학생처에 이단 종교집단의 각종 활동 및 지원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단대책위원회를 둔다.
- ② 교역처에 교목실장을 중심으로 한 이단 종교활동을 감시하고 학생들을 상담지도할 이단 상담위원을 둔다.
- ③ 총 학생회에 이단의 포교활동을 감시하고 예방하도록 협조를 구한다.

**제7조 (업무분담)**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(학생처장)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(교역처장, 학생과장, 교목실과(계)장, 전문 상담위원 외 1인(학생이 속한 학과의 학과장으로 해당 학생의 사안만 참석))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은 본교 교원 및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** (위원회의 업무) 다음의 업무를 시행한다.

- ①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본 지침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이를 심의 후 징계 위원회에 회부토록 총장에게 건의한다.
- ② 총장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** 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**제10조**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- ② 간사는 학생처 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지침의 개폐) 이 지침의 개정 및 폐지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.
- ②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